(재)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 - 149호

「2025년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」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경상북도와 포항시 및 (재)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소재한 기업들의 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「2025년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,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7월 16일

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

Ⅰ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벤처·창업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

≪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현황≫

지정일자	2001. 03. 26	**지정규모**	2.13㎢
지정위치	남구 지곡동, 효자동		
지정근거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		
지구 내 주요입주기관	포항테크노파크, 포항공과대학교, 포항산업과학연구원(RIST), 포항가속기연구소, 생명공학연구센터, 나노융합기술원, 한국로봇융합연구원, 첨단기술사업화센터,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, 포항소재산업진흥원(POMIA)		

□ 지원규모 및 기간

○ 지원규모 : 12개사 내외

○ 지원금액 : 세부사업별 최대 10백만원, 기업당 패키지 최대 15백만원

○ 기업부담금 : 총 사업비의 10% 이상(현금), * VAT 지원 제외

○ 지원기간 : 2025. 8. ~ 2025. 11. (4개월)

□ 지원대상

○ 포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기업(지곡동, 효자동 일대)

Ⅱ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세부사업	지원내용
사업화 기반강화	• 시제품, 시험분석, 지식재산권, 인증, IP,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제품 신뢰성 향상 지원
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	• 기업 제품의 효율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정부 조달 상품 지정 지원
R&BD 기획역량강화	•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획기관 컨설팅, 지원사업 신청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
제품고급화 지원	• 기존 제품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디자인 변경을 통한 고부가 가치화 지원
시장진출지원	• 국내외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홍보·마케팅 지원
투자유치지원	• 투자유치를 위한 IR 컨설팅, IR 홍보물 제작 지원

＊ 지원항목별 상세내용은 별첨1 참조

＊＊ 지원한도 내 단일항목 또는 패키지 신청 가능 (예시: 사업화기반강화+시장진출지원)

□ 지원방법

○ 기업 선집행 후 성공판정 기업에 한하여 TP지원금 지급

Ⅲ 추진일정

모집공고 및 접수	◆ 참여기업 모집공고 시행 및 사업 홍보 ◆ 지원신청서 접수	2025.7월
↓		
선정평가	◆ 신청서류 바탕으로 자격요건 등 사전 검토 ◆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◆ 참여기업 선정 및 TP지원금 확정	2025.8월
↓		
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	◆ 선정결과 통보 및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◆ 협약 체결	2025.8월
↓		
지원과제 수행 및 모니터링	◆ 참여기업 : 수행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◆ 포항TP : 과제수행 모니터링 (중간점검 등)	2025.8월 ~11월
↓		
지원과제 결과평가	◆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결과평가위원회 개최 ◆ 사업수행 성공판정기업 대상 TP지원금 지급	2025.12월
↓		
사후관리	◆ 참여기업 고용 및 매출 실적 조사 및 모니터링 ◆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	2025.12월 ~

Ⅳ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: 2025. 7. 16.(수) ~ 7. 31.(목) 17:00까지

○ 신청방법 : 포항TP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
※ www.ptp.or.kr - 알림마당 – 사업공고 – 온라인신청

① 기업회원가입(필수) → ② 기업정보 및 신청정보입력 → ③ 첨부파일(신청서식) 업로드 → ④ 입력내용 확인 후 신청

*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

○ 제출서류

구분	서식명	비고
필수	1. 지원신청서	서식 제1호
	2.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	서식 제2호
	3.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제3호
	4. 개인/기업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서식 제4호
	5. 견적서 (최종견적서 1부, 비교견적서 1부)	-
	6. 신청기업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	-
	7.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(유효기간 내)	-
	8. 최근 3년간 재무제표 (홈택스 발급분)	-
	9. 최근 3년간 고용인원 증빙서류 (연도말 고용보험가입자 명부)	-
해당 시	10. 지식재산권, 인증, 수상 등 기타 증빙서류	-

V 선정절차

□ 평가절차

○ 사전검토

-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

○ 대면평가

-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기술(제품)의 경쟁력, 시장성 등을 중심으로 대면평가 실시
-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및 발표내용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70점 이상의 기업을 최종 선정

□ 평가항목

평가항목	평가내용	평 가 지 표	배점
사업수행능력 (15)	신청기업의 경쟁력	○ 기업 일반 현황 ○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, 전문성 (인증, 규격, 마크, 특허 등의 보유 정도) ○ 정부과제 참여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	15
기술·제품 경쟁력 (30)	기술성	○ 차별성, 비교우위 요소, 경쟁력 등	15
	시장성	○ 시장규모, 성장 추세, 시장 진입 가능성 등	15
계획의 적정성 (30)	목표의 명확성	○ 목표, 내용 및 결과(산출)물에 대한 명확성	15
	추진전략의 적정성	○ 추진방법 및 전략, 계획의 구체성 ○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	15
지원효과성 (25)	상용화 계획의 적정성	○ 최종 결과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○ 제품(기술)의 기술적, 경제적, 사회적 성과 및 기여	15
	파급효과	○ 사업수행을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○ 신규시장창출, 고용창출, 매출액 증가, 수출증대 등	10
합 계			100

Ⅵ 유의사항 및 기타안내

□ 지원제외 대상

○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인 경우

○ 국세,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○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

○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

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

○ 직전년도 기준 결산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 또는 자본잠식 혹은 결산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
*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이상인 경우 또는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

○ 동일한 신청과제(사업내용)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또는 과제의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
○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

여 제한인 기업

○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

○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□ 기타안내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선정평가 전 신청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하며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

○ 지원대상의 적격성, 필요성, 사업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결정

○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○ 과제수행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간 중 중간점검을 실시함

○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, 반드시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승인 없이 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

○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사업비 집행증빙(기업부담금 집행 증빙 포함)을 함께 제출해야 함

○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
○ TP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으며,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○ 지원기간 중 촉진지구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,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

Ⅶ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e-mail
전략사업본부 기업지원팀	최윤정 주임	054-223-2176	cyj@ptp.or.kr